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19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박성훈·박충권·김소희

김위상 · 이헌승 · 한지아

고동진 · 김도읍 · 김기웅

서지영 · 김성원 · 임이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행해야하며, 세관장은 적합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음. 또한, 납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격신고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때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실제 주체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가격신고를 유도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 수취를 통한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이행관리를 위해 허위·미신고와 과세자료 미제출 등 불성실 가격신고 행위를 제 재함으로써 정확한 내용의 가격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6조제2 항제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제277조제7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생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u> .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		
	<u>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u>		
	위신고를 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 ⑥ (생	제277조(과태료)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7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		
	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자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